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교통행정과】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개정(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기준과 일부 노상주차장 특례사항을 정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다시 정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제한에 관한 조문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제14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고, 주차요금의 특례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1)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적용

2)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은 누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주차장법」 제9조, 제12조의2, 제1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6월 20일 ~ 7월 9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이 광 범
	팀장 직위·성명	교통시설팀장 임 국 남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임 국 남 (790-5480)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급지	1회주차요금 (1구획마다)		일 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		
		30분 기본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1급지	800	300	5,000	50,000	40,000	70,000
	2급지	600	200	4,000	40,000	30,000	50,000
	3급지	400	100	3,000	30,000	20,000	40,000
노외	1급지	800	300	7,000	50,000	40,000	70,000
	2급지	600	200	6,000	40,000	30,000	50,000
	3급지	400	100	4,000	30,000	20,000	40,000
주거지 전 용	주간 및 야간 20,000원 / 주·야간 30,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야의 구분, 야간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요금 징수시간 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다음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50퍼센트 경감)
   나.「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50퍼센트 경감)
   다.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경형자동차 (50퍼센트 경감)
   라. 부제운행차량 (20퍼센트 경감)
   마.「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경감)
   바.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할 수 있다.

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0퍼센트 경감)

4. 다음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준다.

가.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표창일로부터 1년간)

5.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 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

나. 2급지

1) 주거지역

2)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상업지역 중 차수요가 현저히 낮은 주차장으로 시장이 인정한 주차장

다. 3급지 : 녹지지역

6. 승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외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상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모별로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중형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대형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자동차의 구분은「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나.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은 누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주차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 2016.7.20.] 제1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